

알기쉬운 세무상식

사업자 등록안내 ①

본지는 하이텔로 제공되는 국세청세무정보를 받아 제과점을 새로 시작하는 회원들을 위해 사업자등록서부터 업소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기쉽게 편집, 연재합니다. 한편, 여기에 실리는 내용은 이미 업소를 운영하는 회원들에게도 세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편집자 주〉

사업을 시작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주민등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민등록을 하듯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나 업종에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사업자등록 번호는 모든 상거래에 있어 그 사업체를 표시하여 거래시마다 사용되는 고유번호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발급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민원봉사실에서는 전산발급대상인 과세특례자와 개인사업자로서 제조, 도매업을 제외한 일반과세자에게 컴퓨터를 이용 즉시 발급해 주며, 수동발급대상인 경우에는 발급일시를 기재한 접수증을 주게 됩니다(처리기한 7일). 납세자는 예정된 발급일시에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① 사업자등록 신청서 2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 ②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2부
- ③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빌린 경우)
- ⑤ 사업허가증 사본 1부(약국, 음식점, 개인택시등 허가나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

⑥ 법인설립등기전 또는 사업허가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붙이면 됩니다.

과세특례자가 되려면 과세특례적용신고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과세특례 적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세특례 적용신고서를 내시면 과세특례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특례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광업(매출액의 50%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 도매업(도·소매업 겸업시는 소매업도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함)
-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종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 한함)
- 지역, 업종, 규모 등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과세특례적용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때

연간 매출액이 3,600만원(대리, 중개, 주선, 위탁매매, 도급은 900만원) 미만이더라도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셔야 합니다.

사업장이란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

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지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개인도 사업장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직매장도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보관, 관리시설만 갖춘 하치장을 설치하고 그날로부터 10일안에 하치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하치장 설치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기존 사업장외에 각종 경기대회, 박람회, 국제회의 등이 개최되는 장소에 임시 사업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20일전에 임시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한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고, 과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면세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 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전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